

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방향

이 글은 지난해 11월 우리협회 주최로 열린 “정보통신활성화촉진세미나”에서 발표된 내용의 전문이다.

김치동 통신위원회 사무국장

국내·외의 통신사업 경쟁동향

- WTO기본통신협상의 타결, OECD다자간 투자협정(MAI) 등으로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과 경쟁이 본격화
 - 통신사업자간 세계적 규모의 전략적 제휴·합병
 - 국내통신사업자간 경쟁본격화와 M&A 활성화 예상
- 우리나라를 포함, 세계각국은 자국의 통신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추진
 - 경쟁 도입, 민영화, 개방화,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장경쟁체제 구축
 - 상호접속의무 강화, 회계분리, 독립규제위원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경쟁질서 확립
-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신규통신사업의 출현으로 통신사업자간의 업무경계 모호
 - 컴퓨터와 SW기술에 기반한 인터넷의 국제

- 전화등 통신사업분야 진출 시도
 - 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기술의 발전으로 부가통신과 기간통신과의 업무영역이 모호
 - 정보통신기술의 디지털화, 광역화, 쌍방향화의 진전으로 인한 통신과 방송의 융합현상 본격화로 CATV, 지상파방송, 위성방송 등 통신방송시장에 상호진출현상이 대두
- 또한, 정보통신기기, SW분야등 정보기술관련 산업도 정보기술협정(ITA), 한·미 및 한·EU협상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 도래

우리나라 통신시장 규모 및 경쟁환경

- 통신사업자 현황
 - '90년 국제전화사업에 경쟁을 도입한 이래 '97. 11. 현재 총 10개분야 36개 사업자를 선정
 - 이 중 10개분야 43개 사업은 역무제공 개시, 4개분야 14개 사업은 역무제공 개시 준비중

구 분	유 선 서 비 스					무 선 서 비 스						
	시내	시외	국제	전용회선	별정등	이동전화	PCS	무선호출	CT-2	TRS	무선데이터	기타
사업자수	2	3	3	6	-	2	3	13	11	11	3	-
역무개시사업자수	1	2	3	4		2	3	12	11	2	3	
역무준비사업자수	1	1		2				1		9		

※ 10개분야 57개 사업을 허가하였으나 복수역무 제공 사업자가 있어 실제 사업자수는 총 36개

○ 통신시장 규모

- '96년 기준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은 약 10조 6천억원

- '97년 이후 2001년까지 연평균 17.7%성장하여 2001년에는 25조 4천억원 예상

분야 연도	유 선 서 비 스						무 선 서 비 스							합계	
	시내	시외	국제	전용회선	별정등1	소계	이동전화	PCS	무선호출	CT-2	TRS	무선데이터	기타2		소계
1996	30,888	21,741	10,545	5,429	5,906	74,509	19,640	-	11,665	-	-	-	19	31,317	105,826
2001	47,932	34,423	19,312	14,595	15,468	131,730	66,503	22,673	21,141	7,733	1,850	1,277	653	122,326	254,056

※ 자료 : 정보통신발전 중기전망(1997. 6. 정보통신부, KISDI, ETRI, 한국전산원)

1. 별정등 : 음성재판매, 인터넷 전화, 콜백 사업, 공중전화 114등
2. 기타(무선) : GMPCS 등

○ 통신시장 구조

- 통신시장은 한국통신의 시내전화망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, 부가통신사업자등이 상호접속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
- 최근에는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로 유선전화망과 이동 전화망은 점차 대등한 관계로 시장형성
- 음성회선재판매, 인터넷전화, 콜백전화 등의 틈새시장(별정통신사업자)은 '98년 이후부터 형성될 전망

- 이용자에게 end to end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의 통신망과 타사의 통신망을 연결하는 제도
-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, 이용자 편익증진 및 사업자간 공정경제체제의 구축이 주요 목적
- 접속점, 재공교환기, 접속용량, 접속호처리 등의 기술적인 측면과 접속료의 산정과 정산등의 경제적 측면으로 구성

○ 보편적 서비스 제도

- 경쟁도입 이후에도 도서·소외계층이 통신서비스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차원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
- 현재 보편적 서비스의 범위, 재원확보방안, 부담주체 등에 대하여 정통부 관련 실국에서 검토중

○ 전기통신사업자 회계규칙

- 통신사업자가 요금책정, 상호접속료 산정의 일관성·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회계기준
- 기간통신사업자는 동 기준에 의해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검증받아야 함

○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

- 통신사업자간에 발생하는 상호접속의 부당한 차별, 부당한 요금설정, 이용약관 위반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판단기준

통신사업자간 공정경쟁 확보방안

기본방향

- 통신사업자간 기본관계를 규율하는 공정경쟁정책과 각종 제도는 정보통신부 관련실·국에서 수립·운용
- 공정경쟁제도의 틀안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의 조정과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기능은 정통부 소속 통신위원회에서 수행

공정경쟁에 관한 주요 제도

- 통신망간 상호접속제도

- 현재 통신위원회에서 그동안 신고처리된 사안 등을 고려하여 기준 마련중

- 신고센터는 인터넷, PC통신등 가상공간에 마련

통신위원회의 주요 업무

- 정보통신부 관련실국에서 수립한 공정경쟁관련 기준의 심의
 - 상호접속기준, 설비제공기준, 정보제공기준, 공동사용기준
 - 상호접속기준 등에 의한 협정의 인가
 - 전기통신설비 공개기준의 승인
-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
 - 상호접속의 부당한 차별, 부당한 요금설정, 경쟁사 정보유용, 이용약관 위반,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등 발생
 - 사업자 신고 또는 장관 인지 → 사무국 사실조사 및 시정 조치안 작성 → 통신위원회 심의 → 정통부장관 시정조치
 - 시정조치로 불공정행위의 중지, 약관변경, 언론 공표 등
- 통신사업자간 분쟁의 재정
 - 상호접속 등에 대한 협정의 체결, 불이행, 손해배상등과 관련된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
 - 당사자 협의 불성립 → 재정신청 → 통신위원회 재정
 - 60일 이내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성립
- 전기통신업무 이용자의 피해보상 재정
 - 전기통신업무 이용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 발생
 - 당사자 협의 불성립 → 재정신청 → 통신위원회 재정
 - 60일 이내 소송제기가 없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 성립
- 불공정행위 및 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
 - 통신사업자간 불공정행위 신고와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

맺음말

- 통신사업은 다른 일반 제조업과는 달리 통신사업자간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분야임
 -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른 통신사업자의 통신망 사용이 불가피
 - 타 사업자의 원가구조와 통신망의 품질수준이 자신의 통신서비스 요금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
- 통신사업자간의 건전한 경쟁과 협조관계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win-win game으로 이끄는 시장질서 수립이 필요
 - 초기 시장점유율 향상을 위한 무분별한 경쟁활동은 통신사업자 전반의 경영에 지장 초래
 - 국가 신경망인 통신망의 고도화 저해 우려
- 통신위원회는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임.
 -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절차 등 제도적 수단 확보
 - 통신사업자가 상호 분쟁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
 - 그리고 업무처리과정상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신사업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할 것임
- 공정환경 조성은 정부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통신사업을 운영하거나 계획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
 - 경쟁에 관한 협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신위원회의 적극 활용 요망
 -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와 통신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원칙과 관행을 세워나갈 수 있음